



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

의안번호

제90호

**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이태모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3. 6. 8.

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제90호
--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06. 08.

대표발의자 : 이태모

공동발의자 : 김남충, 조배식,
서승필, 장진호,
윤금숙

1. 제안이유

조례 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·보완되지 아니한 별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별표 내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

나.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서식을 정형화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

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3조

나. 기타사항

○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○ 조례안예고 : 2023. 6. 8. ~ 6. 12.(5일간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이태모의원 외 5명

[별표 1]

가.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

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 (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.

만약,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피검사 공무원 선서문

선 서

본인은 논산시의회 (○○○위원회)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 (조사)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(조사)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월 일

기관명 :

선서자 : (인)

다.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

선 서

본인은 논산시의회 (○○○○위원회)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 (조사)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생 년 월 일 :

성 명 : (인)

라. 증인출석요구서

증인출석 요구서(제9조제4항 관련)

귀하

논산시의회가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1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논산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 및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.

- 1. 출석일시 : 년 월 일 시
- 2. 출석장소 :
- 3. 질문요지 :
- 4. 기 타 :

 년 월 일

논 산 시 의 회 의 장

마. 과태료 부과기준

위 반 행 위 별	과 태 료
1.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	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3회 이상	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
나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2회	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
다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1회	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
2. 선서 또는 증언(진술)을 거부한 자	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선서 또는 증언(진술) 거부	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
3.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	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	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

<비고> :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.

바. 과태료 부과·결정 통보서(제21조제2항 관련)

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

논 산 시 장 귀하

논산시의회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○○○에 대한 행정사무조사)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,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6항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— 다 음 —

1. 부과내역
가. 대 상 자 :
나. 부과금액 :
2. 부과이유
3. 첨부서류
4. 그 밖의 사항

년 월 일

논 산 시 의 회 의 장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가.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<u>처벌규정등에</u>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○○년도 행정사무<u>감사</u>(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<u>받기 위한</u> 것입니다.</p> <p>만약, 증인이 허위증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<u>증인</u>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/div> <p>나. 피검사 공무원 선서문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 서</p> <p>본인은 논산시의회 (○○○위원회)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(조사)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41조</u>와 같은 법 시행령 <u>제43조</u> 및 <u>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</u>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<u>맹세하</u>기에 선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기관명 : 선서자 : (인)</p> </div>	<p>가.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<u>처벌규정 등에</u>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○○년도 행정사무<u>감사</u>(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<u>받기 위한</u> 것입니다.</p> <p>만약,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/div> <p>나. 피검사 공무원 선서문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2em;">선 서</p> <p>본인은 논산시의회 (○○○위원회)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(조사)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49조</u>와 같은 법 시행령 <u>제46조</u> 및 「<u>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</u>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<u>맹세하고</u> 이에 선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기관명 : 선서자 : (인)</p> </div>

다.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

선 서

본인은 논산시의회 (○○○○위원회)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 (조사)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 생 년 월 일 :
 성 명 : (인)

라. 증인출석요구서

증인출석 요구서(제9조제4항 관련)

귀하
 논산시의회가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1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논산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.

1. 출석일시 : 년 월 일 시
2. 출석장소 :
3. 질문요지 :
4. 기 타 :

년 월 일

논 산 시 의 회 의 장

다.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

선 서

본인은 논산시의회 (○○○○위원회) 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 (조사)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 생 년 월 일 :
 성 명 : (인)

라. 증인출석요구서

증인출석 요구서(제9조제4항 관련)

귀하
 논산시의회가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1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논산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 및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.

1. 출석일시 : 년 월 일 시
2. 출석장소 :
3. 질문요지 :
4. 기 타 :

년 월 일

논 산 시 의 회 의 장

마. 과태료 부과기준

위 반 행 위 별	과 태 료
1.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	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3회 이상	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
나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2회	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
다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1회	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
2. 선서 또는 증언(진술)을 거부한 자	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선서 또는 증언(진술)거부	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
3.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	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	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

<비고> :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.

바. 과태료 부과·결정 통보서(제21조제2항 관련)

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

논 산 시 장 귀하

논산시의회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○○○에 대한 행정사무조사)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,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6항에 따라 부과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— 다 음 —

1. 부과내역
 - 가. 대 상 자 :
 - 나. 부과금액 :
2. 부과이유
3. 첨부서류
4. 그 밖의 사항

년 월 일

논 산 시 의 회 의 장

마. 과태료 부과기준

위 반 행 위 별	과 태 료
1.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	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3회 이상	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
나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2회	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
다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출석거부 1회	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
2. 선서 또는 증언(진술)을 거부한 자	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선서 또는 증언(진술)거부	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
3.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	
가.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	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

<비고> :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.

바. 과태료 부과·결정 통보서(제21조제2항 관련)

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

논 산 시 장 귀하

논산시의회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○○○에 대한 행정사무조사)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,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6항에 따라 부과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— 다 음 —

1. 부과내역
 - 가. 대 상 자 :
 - 나. 부과금액 :
2. 부과이유
3. 첨부서류
4. 그 밖의 사항

년 월 일

논 산 시 의 회 의 장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47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·진술하는 증인·참고인이 방송·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·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·참고인으로서 증언·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.

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(實費)를 지급한다.

□ 「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

제13조(증인 등 실비보상)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.

② 증인 등에게 보상하는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.

1. 의회의원
2. 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
3.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,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
4.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
5. 허위로 증언·진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·참고인

□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제26조(서식의 제정)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.

논산시의회에서 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논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에서의 증인·감정인 및 참고인(이하 “증인등“이라 한다)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용)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(철도·선박·항공 및 자동차), 현지교통비, 숙박료,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.)

제3조(비용지급의 예외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논산시의회의원
2.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

제4조(비용의 지급기준)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3호를 준용한다

제5조(비용지급일수의 계산)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,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.

제6조(비용지급의 제한)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